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성주하수종말처리장 및 참외생태학습원 등 신규시설의 준공 및 문화예술회관의 기계·전기·소방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보건소의 건강검진사업시행으로 인한 임상병리사의 역할 증대, 노인인구 증가 및 참외하우스 농사에 의한 만성질환자, 관절염환자 증가 등으로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최소한의 정원이 증원 승인되고

○ '05.8. 지방자지단체 혁신진단 결과 정부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21C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혁신 기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객만족을 위한 기구·정원의 승인과

○ '07.1.1부터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위한 기구·정원이 승인되었으며

○ '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위한 정원이 승인되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승진적체가 심한 7급이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조정 560 → 573(증13명
 · 집행기관 549 → 562(증13명)

○ 정원 승인 내역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인력 : 증2명(7급1명, 기능7급1)
- 참외생태학습원 운영인력 : 증2명(7급1명, 기능8급1)
- 문화예술회관 : 증1명(기능9급)
- 보건소 : 증2명(기능9급)
-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한시정원) : 증2명(7급1, 8급1)
- 복식부기 전담기구 설치(한시정원) : 증2명(7급1, 8급1)
- 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한시정원) : 증2명(6급1, 7급1)

○ 직급별 정원조정(일반직)

구분	계 (%)	직급별 정원책정 현황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분포비율		1%이내	6%이내	27%이내	31%이내	24%이내	11%이상
현 행	437 (100%)	3 (0.7)	26 (6.0)	113 (25.8)	133 (30.4)	107 (24.5)	55 (12.6)
금회조정 정 원	445 (100%)	3 (0.7)	26 (5.8)	114 (25.6)	138 (31)	109 (24.5)	55 (12.4)
증감	증8			증1	증5	증2	
직급조정	445 (100%)	3 (0.7)	26 (5.8)	119 (26.7)	137 (30.8)	105 (23.6)	55 (12.4)
증감				증5	감1	감4	

3. 일부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참고사항

○ 기구정원조정 계획

○ 정원 증원 승인관련 공문

○ 비용소요 추계서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560명"을 "57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49명"를 "562명"으로 한다.

제3조 "별표"를 "별표1"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한시정원) 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 신규시설에 대한 정원 승인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한시정원 승인에 따른 인력 증원
제2조(정원의 총수)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6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 : **549명** 2. 의회사무과 : 11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573명**----.---------- -----. 1. ----- : **562명** 2. (현행과 같음)	
제3조(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본청,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에 둥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2005.6.1신설, 2005.8.9개정)	제3조 ---------- ---------- ---------- ---------- ---------별표1과 -----. ----------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정원) (생략)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정원) (현행과 같음)	○ 한시정원을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제5조 〈신설〉	제5조(한시정원) 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